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26 선고 2024가단2083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하남시

소송대리인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최충현

변론 종결 2024. 11. 14.

판결 선고 2024. 12.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 체결한 증여계약을,

나.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1. 6. 3. 접수

제408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6. 21. 접수 제433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C의 자녀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C은 하남시 D 소재 E아파트 각 동의 신축과 매매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가 각 가산금을 포함하여 경정한 조세채권의 2024. 3. 1. 기준 채권액은 합계 59,513,110원(= 본세 48,958,560원 + 가산금 10,554,550원)¹⁾ 이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증여

C은 ① 2021. 6. 1. 피고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3.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21. 6. 18. 피고와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라.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경기광주세무서에 체납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분 585,485,517원을 합한 금액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① 2021. 6. 1. 적극재산

부동산2) 공시지가, 이하 같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47,368,800
----------------------	-----------------	------------

부동산2) 공시지가, 이하 같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47,368,800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43,321,600	
전남 담양군 F 토지	56,600,0003) 지상 주택을 포함한 공시가격의 자료만 제출되어 위 금액으로 산정함, 이하 같음	
전남 담양군 G 토지	7,380,000	
예금채권	우체국 계좌	724,284
합계	155,394,684	

② 2021. 6. 18. 적극재산

부동산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43,321,600
전남 담양군 F 토지	56,600,000	
전남 담양군 G 토지	7,380,000	
예금채권	우체국 계좌	515,579
합계	107,817,17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2021. 10.경 C를 체납자로 분류하고 결정 경정을 통보하였고, 2021. 12.경 및 2022. 1.경에도 결정 통보를 이어갔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C의 재산조회를 통해 이 사건 각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넘어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이 C의 201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있던 2021. 6.경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 2) 피고는 위 적극재산 외에도 C이 H에 대한 57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C의 위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2024. 12. 1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C이 2015.경 H을 외제차량 담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점에서 H에 대한 채권은 결국 위 사기 피해금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위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있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C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피고가 C의 자녀인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C으로부터 담양군 토지를 추가로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1. 6. 3. 접수 제408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6. 21. 접수 제433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정의정

별지

- 1) 갑 제1호증의 체납정리보류리스트 중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임
- 2) 공시지가, 이하 같음
- 3) 지상 주택을 포함한 공시가액의 자료만 제출되어 위 금액으로 산정함, 이하 같음